

심사규정

제 정: 2023. 4. 14.

개 정: 2023. 7. 17.

2023. 11. 22.

1. 심사위원 위촉

- 1)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(이하 재단) 학술지 「동광」 발간을 위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- 2)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- 3)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.

2. 심사 기준

- 1) 논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,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.
- 2)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, 엄격해야 하며,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양한다.
- 3) 투고된 논문에 대해 익명 심사를 한다.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,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.
- 4)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논문에 대해 평가한 '심사의견서'를 제출한다.
- 5)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제목과 연구목적 및 내용과의 일치 여부, 연구의 독창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, 연구동향의 반영도, 분석의 적절성, 학문적 기여도 및 사회복지적 함의, 영문 초록의 정확성에 기초하여 심사하며, 논문 내용상의 수정 요구 시 수정방향 및 게재불가에 대한 심사소견을 포함한다.
- 6) 심사결과를 수신한 편집위원장은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,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7) 논문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요청 날짜로부터 7일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시 요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

3.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누설 금지

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,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.

4. 논문 게재

- 1) 붙임의 표(논문 게재 판정 기준표)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을 하며,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.
- 2)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, “게재”, “수정 후 게재”, “수정 후 재심”, “게재 불가”로 이루어진다.
 - ① “게재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.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.
 - ② “수정 후 게재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, 수정요청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된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.
 - ③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, 수정된 논문을 “수정후재심”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, 이 때의 판정은 “게재”, “게재 불가”로만 한다.
 - ④ “게재불가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.
- 3) 심사를 통해 ‘수정 후 게재가’ 혹은 ‘게재가’ 판정을 받을지라도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상황이 발견되면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 판정을 취소한다.
- 4)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투고하여 모두 심사에 통과한 경우,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 당 한 편에 한하여 게재한다.
- 5)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,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- 6)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,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다. 이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.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.

5. 이의제기 및 재심사

- 1)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7일 안에,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2) 재심사 요청은 서면 양식에 따라 진행하며,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내려받아

- 작성한 후 연구소 이메일(childlight@childfund.or.kr)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- 3) 재심사는 해당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. 다만, 투고자의 불복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롭게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.
- 4)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.

<논문 게재 판정 기준표>

구분	심사자1	심사자2	심사자3	종합판정
심사 논문	게재가	게재가	게재가	게재가
	게재가	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게재가
	게재가	게재가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게재가
	게재가	게재가	게재불가	수정 후 게재가
	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
	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게재가
	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게재불가	수정 후 게재가
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
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게재가
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게재불가	수정 후 게재가
	게재가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	게재가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수정 후 재심
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수정 후 재심
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수정 후 재심
	게재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	수정 후 게재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